심사보고서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도의회 의견 청취 건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 청취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04 2021. 12. 30.(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1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1월 23일

-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가. 제안이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광역도시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도시기능 분담과 상호연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견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계획의 범위
 - 시간적 : 목표연도 2040년
 - 공간적 : 행복도시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개 시군), 12,193.2km²
- O 비전 및 목표
 - 비전 :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
 - 목표(3):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 국토중추, 국제경쟁력을 가진 新 광역생활경제권, 함께하는 상생·협력 행복도시권
- O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 :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관리
 - 교통 및 물류 : 협력네트워크에 기반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 녹지관리 : 행복도시권 녹지공간 연결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확대
 - 환경보전 : 물순환, 대기질 관리,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환경 추구
 - 광역시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치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갈등 관리
 - 경관 : 행복도시권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자연·도시 자원을 활용
 - 문화·여가공간 : 행복도시권 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루트 형성과 농어촌 및 종교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
 - 방재 및 안전 : 포용적 안전관리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강화
- O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 행복도시권 공간구조 및 녹지체계와 부합하는 관리방안 설정
- O 집행 및 관리계획
 - 광역도시계획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역할분담, 광역거버넌스 구성 등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본 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수립한 '2040년 행정 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도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사항임.
- 광역계획권의 중복 지정으로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계획 간의 일관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광역계획권의 확대 및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전·세종·충북·충남의 22개 시군을 행 복도시권으로 지정하고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 권을 비전으로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 국토중추, 국제 경쟁력을 가진 新 광역생활경제권, 함께하는 상생·협력 행복도시권의 3개의 정책 목표와 9개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미세먼지, 대규모 팬데믹 등 지역행정 구역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광역적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광역거점간의 교통연계 및 광역도시기반시설 공동 설치 및 이용 등을 통한 행복도시권의 상생발전으로 충청권의 경쟁력을 확보하 고 나아가 신수도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지침적 성격으로 자체적인 실행수단이 미비하고, 4개 시·도 또는 시·군간 기능분담에 따른 이견·조정으로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실행력 제고를 위한세부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행복도시권 내 22개 시·군 중 충북의충주, 제천, 단양이 제외되어 충북 북부권 발전을 위해 관광, 교통등 협력이 가능한 연계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의 안 번 호 904

제출연월일 : 2021년 11월 11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광역 도시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도시기능 분담과 상호연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장기 전략을 수립 하는 '2040년 행정중심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 목표연도 2040년

- 공간적 : 행복도시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개 시군), 12,193.20km²

○ 비전 및 목표

- 비 전 :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

- 목표(3) :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 국토중추, 국제경쟁력을 가진 新 광역생활경제권, 함께하는 상생·협력 행복도시권

○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 : 저성장 축소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관리

- 교통 및 물류 : 협력네트워크에 기반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 녹지관리 : 행복도시권 녹지공간 연결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확대

- 환경보전 : 물순환, 대기질 관리,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환경 추구

- 광역시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치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갈등 관리

- 경관 : 행복도시권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자연·도시 자원을 활용
- 문화·여가공간 : 행복도시권 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루트 형성과 농어촌 및 종교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
- 방재 및 안전 : 포용적 안전관리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강화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 행복도시권 공간구조 및 녹지체계와 부합하는 관리방안 설정
- 집행 및 관리계획
 - 광역도시계획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역할분담, 광역거버넌스 구성 등
- 3. 의안전문 : 붙임(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요약) ※ 보고서 별첨
-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 요약자료 -













목차

I. 계획의 개요 ···································
II. 미래상과 발전방향
Ⅲ.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계획
Ⅳ. 부문별 계획
1. 토지이용계획
2. 교통 및 물류계획
3. 녹지관리계획
4. 환경보전계획
5. 광역시설계획
6. 경관계획
7. 문화·여가공간계획 ····································
8. 방재 및 안전계획
V.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Ⅵ. 상생협력사업
VII. 집행 및 관리계획 ······
※ 관계법령 및 협약서

I. 계획의 개요

□ (계획수립 배경) 충청권의 5개 광역도시계획을 통합 수립

- 전국 14개 광역계획권 중 중복 지정된 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광 역계획권은 충청권에 지정된 5개 광역계획권이 유일
 - * 행복도시권'07수립, 대전권'05수립, 청주권'01수립, 공주권'16수립, 내포권'16수립
- 계획마다 다핵형 또는 네트워크형 공간구조를 표방하나, 중심도시 가 달라 배후지원도시 설정과 개발축 설정 등 불일치
- 광역획권 중복 지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계획 간 일관성 문제로 광역계획권 확대 및 통합 필요
- 광역도시계획의 통합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구축하고, 광역권 협력을 위한 장기적인 상생발전 도모

□ (광역계획권의 지정) 충청권 내 22개 시·군을 행복도시권으로 지정

- 광역계획권 설정기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충청권 내 총 22개 시·군(인구 486.9만명, 면적 12,193k㎡)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02호(2021.4.19)
 - * 충청권역 전체 시·군에서 6개 시·군(당진·서산·태안, 충주·제천·단양) 미포함

	and the same
SSAN ONEN SCHEET SHEET S	4
에 생물 영역 사용사 기존 행복도시권 용성군 경우사 행보다 변경 생목도시권	5-5
보험시 역원	To got and
	THE THE PERSON NAMED IN COLUMN TO BE A PERSON NAMED IN COLUMN

권역별	면적(km²)	인구(명)
설정(안)	12,193.20	4,869,062
대전광역시	539.53	1,498,839
세종특별자치시	464.89	338,136
충청북도 (충주, 제천, 단양 제외)	4,759.50	1,248,709
충청남도 (당진, 서산, 태안 제외)	6,429.28	1,783,378

※ 광역계획권 외 충청권 잠재지역(당진, 서산, 태안, 충주, 제천, 단양의 경우 개발·교통·녹지축 및 교 통부문(도로망, 철도망), 광역시설(공항, 항만 등) 계획 전반에 연계 방안을 반영

Ⅱ. 미래상과 발전방향

□ 행복도시권의 미래 비전



□ [목표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국토중추

- o 수도권과 지방, 세대 및 계층간 갈등 해소를 포함하는 공간적·사회적 통합의 개념으로 포용적 국토발전 위한 新국가중추의 역할 도모
-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혁신과 성장 거점으로서 중부권의 동반 성장을 지원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이끄는 균형발전 선도 광역권으로 육성

□ (목표 2) 국제경쟁력을 가진 新광역생활경제권

-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신 광역생활경제권으로 육성하여 탄소중립 광역권 실현, 혁신창출, 지역경제의 내생적 발전역량을 강화
- o 행복도시권을 경제거점으로 주변지역의 일자리와 일상생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정비·재편

□ (목표 3) 함께하는 상생·협력 행복도시권

- 행복도시권의 기능분담과 광역거점시설간의 교통연계, 광역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동 설치 및 이용 등을 통해 광역도시권의 경쟁력 확보
- 탄소중립, 대규모 팬데믹, 미세먼지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등 행복도시권의 주요현안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 마련
- o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광역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 주요지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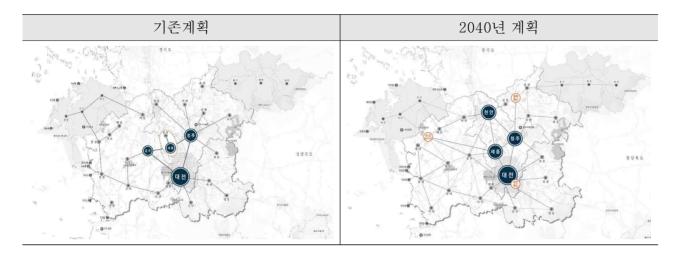
- o (인구) 2040년 행복도시권의 인구지표를 고위 600만명, 저위 565 만명으로 설정
- (가구) 2040년 행복도시권의 가구지표는 고위 274.3만 가구, 저위258.2만 가구, 평균 가구원수는 2.19인으로 설정
- (주택) 2040년 행복도시권 주택지표는 고위 274.3만호, 저위 258.2
 만호, 주택보급률 118%로 설정
- o (종사자) 2040년 행복도시권 경제활동인구는 고위 329.2만명, 저위 309.8만명, 종사자수는 고위 320.3만명, 저위 301.5만명으로 설정
- (환경) 환경지표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로 구성하여, 2040년 행복도시권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0.0μg/㎡ 으로 설정

	구분 주요내용		2040년	
-	인구지표	고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하여 설정하고 관련계획	6,000,000
	(명)	저위	의 계획인구지표를 준용하여, 행복도시권의 인구지표 제시	5,650,000
가구지표 고위		고위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와 관련계획상의 객관적인 가구지	2,743,000
,	// 1 / 1 표 (가구)	저위	- 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복도시권의 가구지표 제시	2,582,000
(//)		평균가구원 수	표 8일 8합니므로 프레이의 행기고시인의 기타시표 세계	2.19
주택지표 고위 (호) 저위 주택보급률		고위	통계청 (新)주택보급률 통계 및 각 시도 주택현황·보급률	2,743,000
		저위	통계, 충북·충남 도종합계획, 대전·세종 도시기본계획 등을 [2,582,000
		주택보급률	검토하여 행복도시권의 주택지표 제시	118.0%
	경제활동인구	고위		3,292,000
산업	(명)	저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하여 경제활동인구를 파	3,098,000
지표	종사자수	고위	악하고 취업자 비율을 적용하여 장래 종사자수를 추계함	3,203,000
	(명)	저위		3,015,000
환경지표 _			2030년 및 2040년 목표는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10
$(\mu \mathrm{g/m^3})$		_	에서 추정한 목표를 연장하여 지표로 적용함	

Ⅲ.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계획

□ (공간구조) 중심지 위계 재정립을 통한 네트워크형 광역공간구조

- o 광역중심도시*는 행복도시권의 광역적 수위 도시로서 국토의 다른 지역과 광역권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수행
 - * 광역중심도시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천안시, 내포신도시(홍성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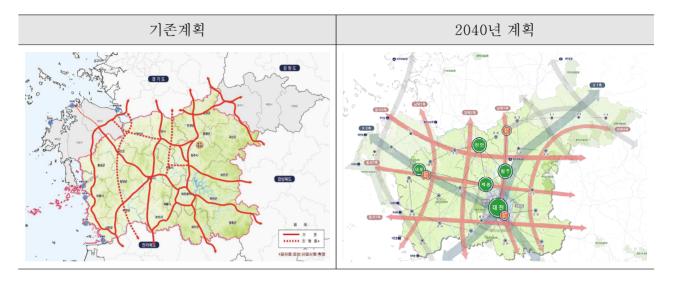
□ (발전축) 국가성장동력 K축 허브로 육성하고 동서남북축 강화

- o 행복도시권의 중심과 수도권, 강원권, 새만금, 대구·경북 등 주 변 성장허브 지역을 연결하여 내륙 저발전지역의 산업 발전 촉진
- 동・서는 미래 신산업축, 도시 간 연계 발전축, 해양-산악관광연계축 을, 남・북은 해양 신산업 육성축 백두대간 여가환경축 강화

발전축 설정	2040년 계획
□ 국가성장동력축 - 국가 성장동력 K축의 허브로 육성	O seri
□ 동·서 축 - 미래 신산업 축(동서발전 1축) - 도시 간 연계 발전축(동서발전 2축) - 해양-산악관광연계축(동서발전 3축)	THE PARTY OF THE P
□ 남·북 축 - 해양 신산업 육성축 - 백두대간 여가환경축	Dones (1998)

□ (교통축) 남북·동서 교통망 연계 강화 및 순환교통망 구축

- o 행복도시권 내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이 원 활하고 권역 내 도시 간 연결이 가능한 교통축 구상
- 원칙적으로 중심도시 주변으로는 환상형 교통축을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은 방사형 교통축 구축



□ (보전축) 훼손되고 단절된 녹지축 연결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 계획권 이외 주변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의 보전축 등을 고려하여 훼손된 녹지 회복, 단절된 보전축 효율적 연결,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를 목표로 설정

보전축 설정 □ 위계별 보전축 - 국토보전축(백두대간): 한반도의 핵심적 생태 보전축 - 광역주보전축, 광역부보전축: 행복도시권 전체를 아우르는 주요 핵심보전축 - 생활권보전축: 3개 권역으로 구분이 예상되는 생활권의 주요 근간이 되는 보전축

□ (기능분담) 미래 신산업 중심과 혁신 생태계를 고려한 기능 분담

- o 자립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복도시권 내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광역중심도시 간 산업기능 특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 o 산업적 수요 확대에 대응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R&D 성과 기반의 산업화를 위한 산업벨트 형성

지역	산업연계 방안		
대전	• 중이온가속기, 대전특구기초과학 성과 활용성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스타트업 및 연계기업 (산업) 육성		
세종	• 대덕특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생성되는 R&D 성과를 산업에 적용 • 초기창업 이후 성장기업 입지와 제조기반 인프라 연계		
충북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허브), 바이오(의료, 제약 등), 에너지(태양광, 이차전지, 수소) 분야 특화 육성 방사광가속기 중심의 의료소재, 신물질, 신에너지 등 세계 수준의 초미세(피코미터급) 소재 부품산업 육성 		
천안의 제조업 기반 국가제조혁신파크 연계 충남 • 공주(첨단소재부품산업), 논산(국방산업) 육성 • 철강·석유화학과 연계한 신소재산업, 자동차 튜닝사업 육성			

□ (생활권 설정) 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 교통, 역사·문화·관광, 환경·안전, 복지·교육 등을 고려하는 권역생활권으로 구상

- o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성장과 자족적 기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없도록 생활권 간 광역기반시설, 산업, 문화 인프라 등 기능적 상호 연계
- o 행정구역을 경계로 구분되는 생활권 외부 연접 도시에 미치는 영 향범위를 고려하기 위해 중첩영향도시를 함께 설정

생활권	중심도시	해당도시	발전방향
대전 생활권	대전광역시	논산시, 계룡시, 옥천군, 영동군, 금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보은군, 공주시, 부여군	국가 교통·물류 중심의 글로벌 기초과학 선도 생활권
세종 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홍성-예산군(내포)	국가행정 중추도시, 신성장거점과 주변지역간 상생발전하는 균형발전 모범 생활권
청주 생활권	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첨단산업, 국제교류,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강호축 중심도시 생활권
천안 생활권	천안시	아산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진천군, 홍성-예산군(내포)	수도권 산업 확장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첨단산업 중심 생활권
내포 생활권	홍성-예산군 (내포신도시)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아산시, 공주시	산업, 해양, 관광이 복합화된 환황해권 중심 네트워크형 생활권

Ⅳ.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 저성장 축소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관리

- 0 도시 주변지역의 도시-농촌-환경 통합관리방안 마련
- 광역 중심도시 주변 난개발 및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지 역에 대한 계획적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기 확정된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개발행위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유도계획 수립(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 0 생활권별 토지이용방향
- 생활권 도심부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의 도심내 집적화를 고려하고, 도심 내 교통거점과 연계한 복합개발 유도
- 비도시지역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을 유도하며.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계획적 관리로 전화

□ (교통 및 물류) 협력네트워크에 기반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0 도시 가 기능 분담과 상생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도로. 철도)



광역계획권 광역도로망 구축방안



광역계획권 광역철도망 구축방안

ㅇ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광역계획권 물류 인프라 확충방안



광역대도시권 대중교통 확충방안

□ (녹지관리) 행복도시권 녹지공간 연결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확대

ㅇ 행복도시권 광역녹지축 설정과 녹지 네트워크 체계 설정



광역녹지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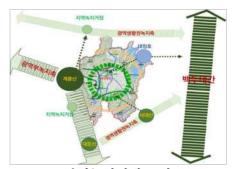


녹지 네트워크 체계 설정

o 단절된 산줄기의 복원과 도시공원 양적·질적 수준 향상



녹지축 단절 고려



광역녹지체계 고려

□ (환경보전) 물순환, 대기질 관리,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환경 추구

- o 물순환 회복을 위한 금강유역 관리와 광역생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구현
- 물관리 일원화(수량·수질·수생태계 통합)에 따른 금강유역 물관 리 관련계획 수립 추진
- 훼손된 생태축 복원으로 행복도시권 핵심 생태축을 구축하고, 시 도민 참여형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정책 추진
- 이 미세먼지 등 광역차원의 대기질 관리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2050 탄소 중립 사회 지향
- 유해물질 노출 예방 서비스 체계 구축과 대기관리권역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광역 협력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등 2050년 넷제로(Net Zero) 추진과 탄소중립 계획수립에 따른 거버넌스 구축

□ (광역시설) 광역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갈등 관리

- 청주공항을 행복도시권의 관문공항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행복도시 권 항만 발전을 위한 교통망 등 연계 강화
- 청주공항의 위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행복도시권의 중추 공항 역 할을 수행하도록 육성
- 보령신항 등 다기능 복합항 개발하여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개발하고, 대 산항을 국제관문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복도시권과 연계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수처리에 대한 수요관리방안 마련 및 하수처리 적정화 도모
-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및 공급여력을 활용한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 립하고 수원 확보를 통해 장래 용수 공급 및 미급수 지역 해소
-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한 지역으로의 우선적 시설 공급을 추진하고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처리시설 분산

□ (경관) 행복도시권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자연·도시 자원을 활용

- ㅇ 행복도시권의 통합 경관계획 수립과 통합 경관관리체계를 구축
- 각 지자체별로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을 활용하여 경관권역, 경관축, 경 관거점을 설정하여 계획을 정합성을 확보
- 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테스크 포스를 조직하고 주민참여 방 안을 실행하고 유형별 통합 경관지침을 제시 및 활용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예시)

□ (문화·여가공간) 행복도시권 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루트 형성 과 농어촌 및 종교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 조직

- o 행복도시권 내 문화권 및 역사·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축을 설 정하고 관광루트를 형성
- 주요 교통거점인 KTX역(대전역, 오송역, 공주역), 거점공항(청주공항), 항 만(대산항 등)을 주요 거점으로 관광루트 개발 및 제공



행복도시권 관광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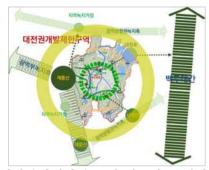
□ (방재 및 안전) 포용적 안전관리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강화

- 안전취약게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피해 유형별 재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 어린이 등
 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 산사태, 가뭄, 지진, 미세먼지, 대설, 폭염, 감염병 등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 이 대형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팬데믹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 행복도시권 화재안전정책위원회 설치와 대형재난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팬데믹 대응을 위한 광역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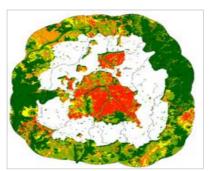
Ⅴ.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 행복도시권 공간구조 및 녹지체계와 부합하는 관리방안 설정

- 이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은 행복도시권 핵심지역으로 행복도시권의 발전과 관련이 있어 행복도시권에 부합하는 관리방안 마련
-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연계된 관리방안을 수립
- 광역권 내 지자체간 개발제한구역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대전광역생활권 녹지 네트워크(예시)



개발제한구역 5km 버퍼링 결과

Ⅵ.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 □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복도시권을 형성하고 국가적 이슈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해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 행복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산업 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거점도시 간, 사업 간 연대·협력 필요성이 증대
 - o 협력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 자체별 대응이 어려운 광역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 필요

□ 21년도 상생협력 후보사업 리스트

산업경제 1-1. 행복도시권 가속기 클러스터(ACE) 구축 문화관광 2-1. 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 조성, 2-2. 행복도시권 관광도로 도입 환 경 3-1. 기후변화대응 통합거버넌스 구축, 3-2. 광역 수소충전소 협력 배치 국제교류 4-1. 행복도시권 MICE 산업 육성 광역교통 5-1. 행복도시권 광역 교통망 확충

Ⅷ. 집행 및 관리계획

- □ 광역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하여 시·군, 시·도, 행복청, 중 앙정부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필요
 - (시·군 역할) 상위계획 및 특정목적 성격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제 외한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은 시·군에서 입안하여 추진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체계 등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관심 유도
 - (4개 시·도 역할) 광역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사업 중 주변 시· 군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역할 수행
 - (행복청 역할)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역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및 조정
 - 광역도시계획의 집행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광역도시계획 협의기 구에 참여하여 행정·재정 측면의 협의·관리 등을 지원
- □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집행·관리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위한 광역 거버년스 구성 방안 마련
 - o (의결기구) 행복도시권 광역도시 위원회(가칭)
 - 광역도시계획 의결, 정책 및 예산지원, 지자체 갈등 및 사업계획 조정
 - ㅇ (자문기구) 상생발전 협의회(가칭)
 - 광역도시계획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 ㅇ (집행기구) 광역도시본부(가칭)
 - 분야별 광역사무를 집행하고, 위원 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



[관계법령]

□ <u>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u> 위한 특별법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건설청장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제60조 제4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자문하 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 14조 제15조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 ④ 건설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시·도지사(이하 "광역계획권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⑤ 건설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과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설청장 및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 ②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며, 국토교통부장관·건설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 영할 수 있다.

□ <u>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u>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은 읍·면 또는 동의 관할 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 ① 건설청장은 법 제17조 제2항·제3항및 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환경·교통·토지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 ② 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는 건설청장은 관보에, 관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공보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③ 법 제17조 제1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2.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계획인구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3. 광역시설의 배치 · 규모 · 설치에 관한 사항
 -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 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야 한다.





협 약 서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과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과 충청권내 광역계획권 등의 지역에 대해 통합된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및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이하 광역도시계획수립등)하고,광역도시계획수립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및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이하기획단)의 구성·유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합이다.
- 제2조(업무범위) ① 행복청장은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용역 시행 및 광역상생 발전기획단 구성·운영과 광역도시계획수립등을 위한 총괄·조정업무를 수행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수립등을 위하여 해당 시·도 의견 제출 등 관계 법령 및 이 협약서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정책협의회) ① 광역도시계획수립등에 대한 주요내용의 협의, 조정 및 입안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이하 시·도)는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정책협의회는 광역도시계획수립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정책협의회는 이 협약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수립등) ① 행복청과 시·도는 광역도시계획수립등을 위하여 용역 시행, 계획안 입안, 공청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시행한다.
 - ② 행복청과 $\Lambda \cdot \Sigma$ 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책임 한계 및 업무범위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기획단) ① 행복청은 정책협의회 의사결정 지원과 광역도시계획수립등에 대한 실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복청 및 시·도 소속직원들과 전문가로 기획단을 구성 · 운영한다.
 - ② 행복청은 제1항에 따른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 · 도에 해당기관 소속직원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복청에서 파격을 요청할 경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효력기간) 이 협약서는 행복청장 및 시·도지사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고시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시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협약서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광역도시계획 수립·관리" 관련 업무로 본다.
- 제7조(기타사항) ①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조정하며. 정책협의회에서 조정한 결과는 행복청과 시·도에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
 - ② 행복청과 시·도는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5, 2,

충청북도지사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 자치시장

충청남도지사











OM3 415 stant 1-23 853



